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0.06. . 제 출 자:평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09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원)

							, – . ,	-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	세입결산액	/	세출결산액		차인잔액	
		(A)	(B)	/B/A (%)	(C)	/C/A (%)	(D)=(B)-(C)	/D/A (%)
계	324,810,234,000	396,063,067,450	391,820,314,383	99	351,187,688,473	89	40,632,625,910	10
일반 회계	259,898,505,000	315,951,088,530	312,609,684,805	99	285,259,613,741	90	27,350,071,064	9
특별 회계	64,911,729,000	80,111,978,920	79,210,629,578	99	65,928,074,732	82	13,282,554,846	17

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 납 액 (C)	/C/A (%)	미수납액 (D)=(B)-(C)	D/A (%)
계	324,810,234,000	396,063,067,450	400,706,659,812	101	391,820,314,383	99	8,886,345,429	2
일반 회계	259,898,505,000	315,951,088,530	319,681,147,614	101	312,609,684,805	99	7,071,462,809	2
특별 회계	64,911,729,000	80,111,978,920	81,025,512,198	101	79,210,629,578	99	1,814,882,620	2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지출액 (B)	B/A (%)	이월액 (C)	/C/A (%)	집행잔액 (D)	D/A (%)
계	324,810,234,000	396,063,067,450	351,187,688,473	89	35,175,082,100 (466,101,473)	9	9,700,296,877	2
일반회계	259,898,505,000	315,951,088,530	285,259,613,741	90	22,402,832,830	7	8,288,641,959	3
특별회계	64,911,729,000	80,111,978,920	65,928,074,732	82	12,772,249,270 (466,101,473)	16	1,411,654,918	2

※이월액은 ()안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.

라.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계	41,098,727,383 (466,101,473)	15,228,786,500 (466,101,473)	4,722,929,060	15,223,366,540	1,047,175,805	4,876,469,478
일반회계	27,350,071,064	9,549,137,870	4,101,241,560	8,752,453,400	1,007,085,915	3,940,152,319
특별회계	13,748,656,319 (466,101,473)	5,679,648,630 (466,101,473)	621,687,500	6,470,913,140	40,089,890	936,317,159

[※] 이월액은 ()안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한 수치임

마. 회계별재무제표 총괄

(단위:원)

						근기 · 년/	
구분	재	정상태보고	서	재정운영보고서			
회계별	자 산	부 채	순자산	수 익	म) 8	운영차액	
일반회계(A)	1,889,528,737,637	24,286,184,570	1,865,242,553,067	220,822,383,874	178,386,492,630	42,435,891,244	
공기업특별회계(B)	79,020,375,866	2,294,446,717	76,725,929,149	3,901,745,483	5,249,371,343	(1,347,625,860)	
기타특별회계(C)	183,060,088,995	944,559,760	182,115,529,235	39,832,219,890	10,579,405,506	29,252,814,384	
기 금(D)	5,385,568,620	0	5,385,568,620	2,376,140,540	330,671,582	2,045,468,958	
내부거래(E)	(32,886,865,000)	0	(32,886,865,000)	(7,010,568,953)	(7,010,568,953)	0	
합 계 (A+B+C+D-E)	2,124,107,906,118	27,525,191,047	2,096,582,715,071	259,921,920,834	187,535,372,108	72,386,548,726	

[※] 순세계잉여금=세입결산액-세출결산액-명시이월-사고이월-계속비이월-보조금집행잔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"관계법령 발췌서 붙임"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

나. 기타사항

-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 붙임
-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134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]

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59조 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「지방자치 법」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.
-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[개정 2008.2.29 제20741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